해외연구보고서

미국의 지역사회개발 보조금 운영사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뉴욕사무소 정헌율

목 차

Ⅰ. 연방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체계

1. 국고보조금(Grants)
2. 간접적 보조
3. 주 세법의 연방 세법과 연계운영
4. 사무위탁
5.‘게임의 룰’ 설정
6. 거시 경제정책

Ⅱ. 국고보조금 운영현황

1. 국고보조금의 목적 및 이론적 근거
2. 국고보조금 제도의 발전과정
3. 국고보조금의 유형
4. 국고보조금 운영현황

Ⅲ. 지역사회개발 보조금 운영사례

1. 현행 지역사회개발 보조금의 유형
   1) 대도시 지역사회개발 보조금(Entitlement Communities CDBG)
   2) 소도시 지역사회개발 보조금(the Small Cities CDBG)
2. 운영사례
   1) 프로그램 소개
      (1) 14.218, 대도시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2) 14.219, 소도시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2) 유형별 사례

미국의 지역사회개발 보조금 운영사례

Ⅰ. 연방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체계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지방재정은 국가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운영되는 것인 만큼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80년의 공공부분 세입구조를 보면 전체세입 중 연방정부가 56%, 주정부가 25%, 지방정부가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지금까지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은 전체 수입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소득세이다. 소득세는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같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세수 증가율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반면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로 의존하는 재산세와 판매세는 매우 경직되어 있어 세수증가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수증대를 위한 입법 활동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1930년대 시행된 New Deal 정책으로 연방정부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연방정부의 세수가 늘어도 연방정부에서 이를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보조금 등을 통해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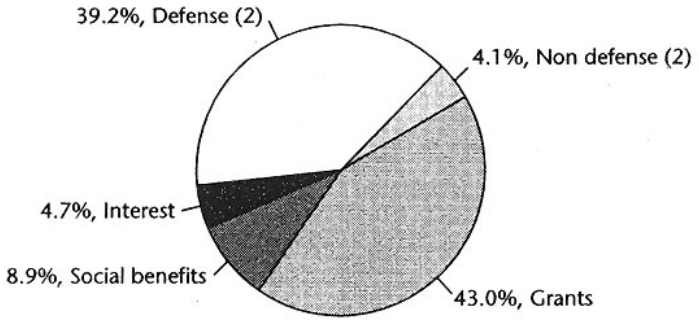
대표적인 사례가 1960년대 존슨 행정부의 'Great Society' 정책과 1970년대 닉슨 및 포드 행정부의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 정책인데, 이 양대 정책을 추진한 결과 연방정부의 예산규모는 커졌지만 연방정부는 연방공무원 수를 늘리는 대신 국고보조금을 대폭 늘려 '연방정부는 걷고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쓰는' 구조를 구축하였다.

【표 1】, 【표 2】와 같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는 세입과 지출 양면에서 모두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예산상의 명시적인 관계뿐 아니라 재정·금융 정책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해서도 연방정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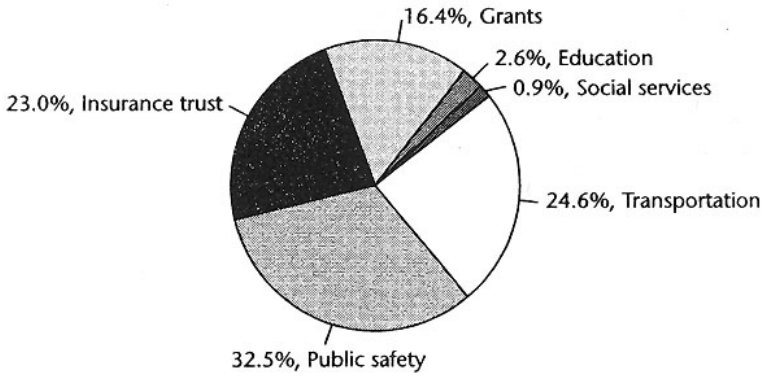
【표 1】 각급 정부의 지출구조

Figure 14-2. Decomposi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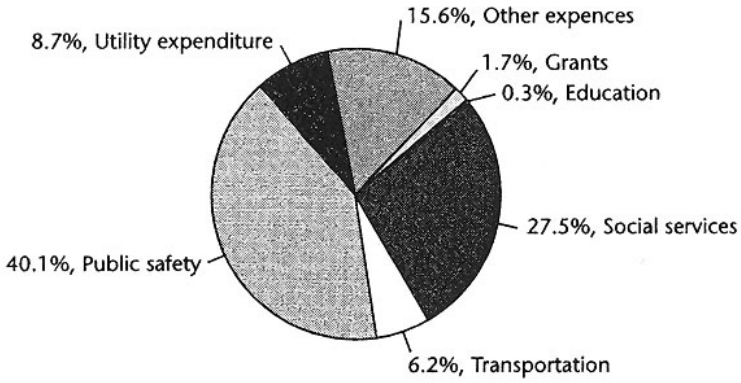
A. Decomposition of federal government expenditures, 2002-03 (1)
Total expenditures : $2232.6 billion



B. Decomposition of state government expenditures, 2002-03
Total expenditures : $1359.0 billion



C. Decomposition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2002-03
Total expenditures : $1194.9 b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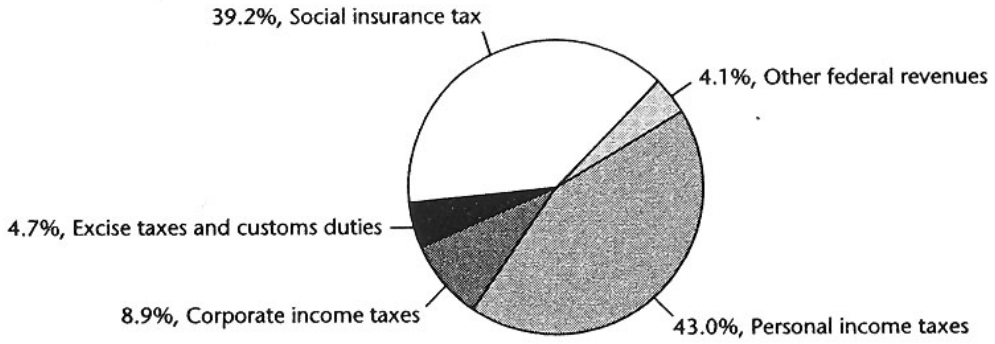


1. Fiscal year 2002 Q3 to 2003 Q2
2. Including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gross government investment
Sou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and Bureau of the Cen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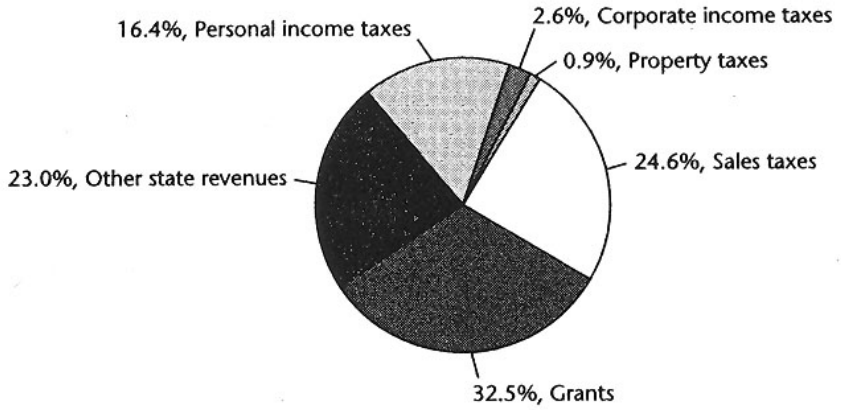
【표 2】 각급 정부의 수입구조

Figure 14-3. Decomposition of government reven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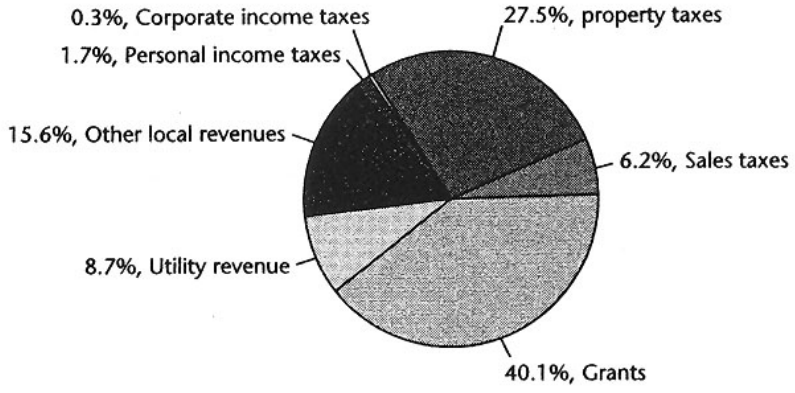
A. Decomposition of federal government revenues, 2002-03 (1)
Total revenues : $1895.7 billion



B. Decomposition of state government revenues, 2002-03
Total revenues : $1295.7 billion



C. Decomposition of local government revenues, 2002-03
Total revenues : $1140.6 billion



1. Fiscal year 2002 Q3 to 2003 Q2
Sou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and Bureau of the Census.

1. 국고보조금(Grants)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교부세제도와 같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없다. 따라서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를 인상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국고보조금이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은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연방정부가 특별히 지정한 국가적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자치단체들은 철저한 경쟁을 통해 프로젝트 베이스로 배분받는다.

다만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의 영향으로 '서비스를 받는 주민에 가까운' 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일정공식에 의해 배분되는 공식보조금(Formula Grants)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통폐합하여 보조기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려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방보조금의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개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보조금이 1970년에 36%에서 1999에 63%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급속히 증가한 의료보조(Medicaid)에 기인하는데, 1970년에 전체 보조금 규모의 11% 수준이었던 의료보조(Medicaid)가 2004년에는 43.4%로 증가하였다.

또한 가장 최근에 출현한 보조금으로서, 우리나라의 공동세 제도와 같이 자치단체의 신청에 관계없이 법령이 정한 일정한 공식에 따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공동세입형 보조금(Revenue Sharing)이 있다.

미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70년부터 1999년 동안 연방보조금이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났다. 처음에는 25% 수준이었다가 꾸준히 상승하여 1980년에 40%로 정점에 오른 후 감소하다가 1992년 이후에 다시 상승, 3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1)]

2. 간접적 보조

연방정부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세법을 통하여 3가지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첫째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소득세 부분을 국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이고, 둘째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공채의 이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세액감면이며, 셋째는 주정부의 상속세에

대한 연방정부의 크레디트(Credit) 제공이다.

첫 번째 방법으로서, 현재 개인이 내는 소득세, 부동산세, 재산세는 일정 시기에 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연방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000년도 기준으로 연방정부는 648조 달러 규모의 세액을 공제했다. 공제된 세액만큼 지방세의 과세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세액공제는 이처럼 연방정부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게 제공하는 묵시적인 형태의 보조금으로 간주된다. 세액공제를 통해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세금을 걷기가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지출이 늘어나 진취적으로 재정정책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세액공제로부터 지방정부가 얻는 혜택은 연방정부가 손실한 금액과 동일하지 않은데, 한 연구에 의하면, 연방정부 손실의 25% 정도의 혜택이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것으로 밝혀졌다.[2)]

두 번째 방법은 세금감면으로서,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자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여 정상적인 이자율보다 낮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 결과, 연간 4.25%의 수익을 낳는 채권을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3.75%에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이 덕분에 채권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더욱 쉬워진다. 연방정부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채발행에 관한 세금감면으로 입은 손실은 2000년도 기준으로 연간 384조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3)]

세 번째 방법으로서, 금액은 적지만 최근에 출현한 주정부의 상속세(Death Tax)에 대해 연방정부가 크레디트(Credit)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정부 대부분은 부동산세를 연방정부 납부분에 크레디트(Credit)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방 부동산세에 연계시켜 놓고 있다. 2001년 기준으로 35개 주가 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납세자에게 세액을 증가하지 않고도 연방 부동산세 부분을 주 부동산세로 이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생긴 연방정부의 손실은 2000년을 기준으로 64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4)]

【표 3】 지방재정지원의 주요형태(2000)

지 원 유 형	금액(10조 불)	비 율(%)
보 조 금	284.1	72.1
세 액 공 제	64.8	16.5
지방채 이자감면	38.4	9.8
주 상속세에 대한 credit	6.4	1.6
합계	393.7	100.0

3. 주 세법의 연방 세법과 연계운영

주정부의 개인소득세나 법인세는 연방정부의 그것과 흔히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주정부 재정에 많은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주정부의 개인소득세를 연방 개인소득세에 연계시키면 납세자의 세금납부가 편리해지고 주정부의 행정비용도 줄어든다. 이를 위해 주 국세청은 연방정부와 정보공유 협정을 맺음으로써 주정부의 회계관리 비용을 절감한다.

이와 같은 세법의 연계 운영에서 어려운 점은 연방정부가 세법을 개정했을 때이다. 예를 들면, 연방에서 개인소득세를 인하하면 주정부의 개인소득세는 마이너스 금액이 된다. 물론 주 의회에서 세법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하려 하겠지만 복잡한 정치상황 등으로 세법개정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다. 부시 대통령이 2002년 3월에 서명한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주정부는 법인세 수입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관심을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46개 주는 법인소득세를 연방세법에 연계시켰고 25개 주는 연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도록 해 놓았다. 이런 구조 때문에 경제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는 3년 동안 주정부 수입은 147조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

또한, 연방정부 수준에서 근본적인 세제개혁의 가능성이 종종 거론되고 있다. 이 논의는 주로 현행 소비세를 일종의 소득세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연방정부는 개인소득세나 법인소득세에 소비형태의 가치를 반영하는 세금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법 구조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세제개혁 결과에 따라서는 위에서 언급

한 세법을 통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형태의 지원방식이 철폐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주정부에게 소득세에만 의존할 것을 강요할 수도 있다. 또 연방정부가 소비세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혁하면 결국 저축이 늘어나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판매세 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다.

4. 사무위탁

1970년대 이래 연방정부는 사무위탁과 관련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쟁의 모든 내용이 재정부담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의 가장 큰 불만은 사무위탁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이다. 1979년 연방정부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게 1,259개의 사무를 위탁하였는데 이중 1,036개는 재정보조를 조건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223개는 재정보조 없이 법령에 의한 강제위탁이다.[6)]사무위탁과 관련하여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전가시켰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비용전가가 가장 컸던 사무위탁은 1975년의 특별교육에 관한 입법일 것이다. 이 법률은 모든 주는 6~17세 사이의 모든 장애자들에게 무료교육을 시키되, 어린이 각각에게 적합한 개인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등을 주요 내용하고 있다. 장애아들에 대한 교육비는 정상아들보다 2~3배가 많은 만큼, 연방정부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학교구는 정상아들의 교육비 예산을 삭감하여 장애아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근 수십년 간 누적된 사무위탁 비용의 전가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5. '게임의 룰' 설정

연방정부가 주 및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헌법·법률·판례 등으로 게임의 룰을 설정하여 지방재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 연방법원이 판례를 통해 'nexus'라는 용어를 모호하게 해석한 나머지 다주적 또는 다국적 법인체나 전기업자에게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nexus’ 에 대한 연방법원의 모호한 해석으로 경제활동의 왜곡, 판매세의 침식, 막대한 소송비용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가 게임의 룰을 설정하여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7)]

6. 거시경제정책

마지막으로 연방정부는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으로 지방재정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재정지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경제 불황기에 채권이자율을 낮춘다든지 하는 금융정책은 지방재정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또한, 경제 침체기에 주정부는 고용동결 등을 취하면서 예산삭감, 세금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주정부의 재정상 문제점을 그대로 지방정부에 전가한다.

Ⅱ. 국고보조금 운영현황

1. 국고보조금의 목적 및 이론적 근거

연방 국고보조금의 이론적 근거는 경제적·정치적·행정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주나 자치단체의 경계를 넘는 외부효과이다. 예를 들어, 주 간 고속도로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특정지역의 납세자는 이를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 게다가 21세기 초에 개정된 소득세법 조항은 주정부나 지방정부보다는 연방정부의 세입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작성된 까닭에 심각한 재정 불균형 현상을 초래했다. 그러나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기업이나 주민이 다른 경쟁지역으로 이동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세금을 더 걷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

정치·사회적으로 보조금은 극빈자나 소외계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직접 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에 반대한다면 연방보조는 앞서 말한 외부효과 때문에 정당

화된다. 어느 한 지역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정부 서비스의 혜택을 본다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납세자가 극빈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자금을 의결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한편, 연방주의자들은 보조금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보조금은 주나 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수준을 균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국고부조금이 부유한 자치단체보다는 가난한 자치단체에 많이 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많은 보조금 프로그램이 매칭펀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 규모가 큰 부자 자치단체에 보조금 수령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보조금을 배정할 때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는 경우는 24개 보조금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다.[8)]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이유는, 보조금 정책은 그 결정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야 정치적 지지를 얻기가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보조금은 행정서비스의 균등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배분될 수 있지만 연방정부의 보조금 전체를 놓고 보면 항상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는 무관하게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보조금은 국가적 관심사항, 즉 국가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배분된다. 그러나 국가적 관심사항이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국가적 관심사항에 기여했는지도 알 수 없다.

셋째, 연방정부는 세금을 걷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세금을 징수하여 주정부 및 자치단체에 분배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치단체는 현재의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문제에 부딪힐 때 재정난에 봉착하게 된다. 재산세나 판매세는 연방세인 개인 소득세 등에 비해 과세 신장률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탄력성이 낮다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국고보조금을 통해 연방정부 공무원이 지방행정에 관여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여준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뉴욕·미네소타·위스콘신 같은 주는 행정수준이 연방공무원 수준 이상이며 오히려 연방공무원의 늑장행정·관료주의·red tape·책임전가 등이 더 큰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9)]

2. 국고보조금 제도의 발전과정

1) 건국 초기(1789~1862)

건국이후부터 시민전쟁 이전까지는 각 주의 활동에 관한 국가의 관여가 극히 제한되었으며, 국방·외교·통화·우편사무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연방정부가 관여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라는 개념이 들어설 여지가 거의 없었다.

2) 현물지급기(1862~1911)

주의 권리운동이 정점에 달하고 시민전쟁이 일어난 기간이다. 1862년 'The Morrill Act'의 제정으로 새로운 연방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일정한 공공용지가 보조금으로 각 주정부에 넘어갔다. 각 주는 이 땅을 팔아 고등교육에 투입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land grant colleges'로 알려진 대학들이다. 연방의회는 이들 교육기관에 농업과 기술교육을 전담할 것을 요구했고, 전쟁 중이었던 1862년에는 군사교육을 추가하도록 했다. 북부군은 전쟁을 위해 과학자와 기술자, 군량미를 조달할 농부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당시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요구가 없었고 주정부는 전문적인 기술지원과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연방정부의 감독 기능이나 회계감사 기능 같은 것은 없었다.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연방의회는 현물보조금을 현금보조금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1887년에 'The Hatch Act' 에 의하여 처음으로 농업실험기관을 창설하기 위한 연방보조금을 주정부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현금보조금을 통해 연방정부의 감독기능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현금보조금은 보조금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1902년까지 연방보조금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수입의 1%를 넘지 못했고 연방정부 지출의 1% 정도에 불과했다.

3) 카테고리 보조금 발전기(1911~1964)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1년에서 Johnson 행정부에 의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급증하던 1960년대까지 약 50여 년 간은 연방보조금이 꾸준히

증가한 시기다.

1913년 제16차 개헌으로 소득세를 신설하면서 보조금의 규모가 커지고 보조금의 성격도 바뀌기 시작했다. 1922년에는 소득세가 연방수입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된 덕분에 세수탄력성이 낮아 재정운영에 곤란을 겪던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sharing of revenue' 제도를 신설하여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배분하였다.

1916년 처음으로 연방공무원의 완전한 감독을 받는 '고속도로건설 연방보조금법'이 통과되었는데, 도로건설을 위해 주 정부의 면적, 인구, 시골우편도로의 길이를 감안하여 산출해낸 보조금을 주정부에 지급하였다. 1920년대에는 이 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의 75%를 차지할 정도였다.

1933년부터 1938년까지 경제 불황기에는 많은 비상대책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특히 1935년에는 16개 프로그램에 22조 달러가 투입되었으나 대부분 1940년대에 종료되었고 사회보장 프로그램만 지금까지 남아 오늘날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주춧돌이 되었다.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기 위해 주 정부들은 종전보다 많은 규제를 받아야 했으며 프로그램별 요구사항, 프로그램 옵션의 범위, 재정 인센티브 참여 정도 또한 증대되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또 다른 변화로, 경제 불황에 지친 대도시 들은 연방정부에 직접 보조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 1933년에는 미국시장군수협의회(USCM)가 구성되었다. 이들의 끈질긴 로비로 1937년에 'The Housing Act'라는 주택보급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주택보급 프로그램은 지방정부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의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정부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었다.

4) 보조금 급증기(1964~현재)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보조금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범주형 보조금(Category Grants)이 퇴조하고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이 증가한 것이다. 사전에 연방정부가 지정한 극히 제한된 사업에

만 사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형태인 카테고리 보조금은 1968년에 총 보조금의 98%를 차지했다가 1977년에는 76%로 급감하였다.

가장 최근에 신설된 보조금은 1972년에 신설된 '공동세입형 보조금(General Revenue Sharing)'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부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보조금으로, 39,000여 일반 자치단체에 용도의 제약 없이 일정한 공식에 의해 자동적으로 배분되어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 오늘날의 국고보조금 체계가 구축되었다. ACIR(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의 통계에 의하면 1978년에는 492개의 카테고리 보조금, 5개의 포괄보조금, 그리고 한 개의 공동세입형 보조금(General revenue Sharing)이 있었다. Jonhson 대통령 당선 이후 보조금의 숫자와 유형,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1978년에는 1963년보다 10배가 늘어난 800조 달러 규모가 되었고, 예산규모로 보면 1960년에 연방예산의 7.6% 이었던 것이 1977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17%가 되었다. 특히 1962년부터 1967년 사이에 보조금이 급증한 것은 1965년과 1966년의 2년 동안 왕성한 입법 활동으로 130개의 보조금이 신설된 데 기인한다. 이 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심사받는 사업보조금(Project Grants)이 일반화되면서 연방공무원의 재량권이 다시 강화되었다. 즉, 1964년부터 1966년 사이에 공식보조금(Formula Grants)은 39개가 신설된 것에 그친데 반해, 사업보조금(Project Grants)은 160개가 신설되었는데, Johnson 행정부는 Great Society 정책에 의해 주정부를 제치고 지방정부에 직접 배분하는 보조금을 증대시켰다. Jonhson 행정부와는 대조적으로 Nixon 행정부는 보조금의 급증을 제어하려 노력했지만 보조금 제약사항은 오히려 2배로 증가했다. Nixon 대통령의 신연방주의는 유연하고 광범위한 보조금을 강조한 결과 연방의회는 공동세입형 보조금(General Rrevenue Sharing)과 몇 개의 포괄보조금을 신설했다. 이처럼 카테고리 보조금을 양산하는 속도를 낮춤에 따라 1975년에는 보조금 수가 442개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Carter 행정부에서도 지속되었다. 보조금에 투입된 예산이 1976년 580조 달러에서 1979년에 820조 달러로 극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보조금 숫자도 492개로 다시 늘어났다.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보조금의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는데, 1970년대 후반기 이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제 보조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

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국고보조금의 유형

국고보조금에는 범주형 보조금(Category Grants), 포괄 보조금(Block Grants), 공동세입형 보조금(Revenue Sharing)의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중에서 범주형 보조금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보조금 구성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ACIR(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기준에 의하면, 이들은 보조금 운영에 관한 연방관리자의 재량권의 범위, 보조사업에 관한 보조사업자의 재량권 범위, 그리고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조건의 유형, 수량, 내역, 범위 등에 의해서 구분된다.

범주형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인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게 제약을 가장 많이 가하는 보조금이다. 이는 연방 보조금 관리자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을 부여하는 데 재량권을 행사하고, 보조금이 사용되는 활동의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공동세입형 보조금은 법에서 정한 공식에 따라 면적, 주민수 등 객관적 지표에 의하여 주정부 및 자치단체에 배분되기 때문에 목적이나 절차에 관한 제약이 가장 적다.

포괄 보조금은 이 두 가지 보조금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것으로서 법률로 정해 놓은 공식에 의하여 배분된다. 이는 국가적 목적사업에 사용하되 보조사업자인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재량에 의해 사업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자율성이 높은 보조금이다.

1) 범주형 보조금(Catagory Grants)

범주형 보조금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특정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도록 연방의회에서 법령으로 지정한 보조금이다. 교육훈련비 지원, 하수처리장 시설의 건설, 범죄예방 등과 같이 극히 제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된 활동에 지원된다. 이 보조금은 분배방식에 따라 사업보조금, 공식보조금, 절충형보조금, 상환보조금의 4가지로 재분류할 수 있다.

사업보조금(project grant)은 보조금 관리기관이 지정한 용도에 맞추어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서를 제출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교부되며, 현재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보조금이다.

【표 4】에서와 같이 전체 보조금 프로그램의 67%인 29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금액으로 보면 31%인 11.6조 달러에 불과한데 이는 사업보조금이 소액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식보조금(formula grant)은 주민수, 자치단체의 크기, 재정확보 노력 등으로 구성된 일정한 공식에 의해 적격 기관에게 배분되는 보조금이다. 전체 보조금 중 프로그램 개수는 21.9%에 해당하는 97개이고 금액기준으로는 전체의 23%인 8.6조 달러로, 사업보조금 다음으로 많은 보조금이다.

절충형보조금(formula-project grant)은 위 2가지의 통합방식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인데, 법령에 규정된 공식에 근거하되 지원자간 경쟁에 의해 사업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따른다. 흔히 주정부가 인구 수나 공무원 수 등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배정받은 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사업제안서는 연방정부의 입법에 근거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현재 운영되는 절충형보조금 프로그램 수는 전체의 7.9%에 해당하는 35개이다.

상환보조금(reimbursement grant)은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연방정부가 사후에 상환해 주는 것으로, 경쟁이 없이 법에서 보장한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에게 인기가 높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s Highway) 건설인데, 총사업비 중 주정부가 부담하는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연방정부로부터 상환 받는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현재 1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전체 보조금의 38.6%에 해당함으로서 사업보조금보다도 많다.

【표 4】 범주형 보조금의 유형별 현황(1975)

구 분	숫자(개)	비율(%)	금액(조달러)	비율(%)
합 계	442	100.0	37.4	100.0
사 업	296	67.0	11.6	31.0
공 식	146	33.0	25.8	69
- 공식형	(97)	(21.9)	(8.6)	(23.0)
- 절충형	(35)	(7.9)	(2.8)	(7.4)
- 상환형	(14)	(3.2)	(14.4)	(38.6)

*출처: ACIR, Categorical Grants, A-52(1977), p.92

연방보조금의 대부분은 사업의 비용을 보조사업자와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조금을 메칭 보조금(Matching Grants)이라 부른다. 메칭 보조금은 전형적인 보조금 형태인 범주형 보조금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50:50, 75:25 등과 같이 메칭 비율이 사전에 법으로 정해진 보조비율고정 보조금(Close-ended Matching Grants)과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끼리 경쟁에 의해 메칭 금액이 결정되는 보조비율변동 보조금(Open-ended Matching Grants), 그리고 이러한 메칭 조건이 없이 사업비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정액보조금(Lump-sum Grants)이 있다.

【표 5】 와 같이 연방보조금 프로그램 442개중 절반가량인 205개 프로그램이 메칭을 요구하고 있고 메칭비율은 50% 미만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50%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1개 프로그램밖에 없다. 또한, 전체의 40% 정도인 170개 프로그램이 정액보조금(Lump-sum)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보조비율변동 보조금(Open-ended Matching Grants)은 하나도 없다.

【표 5】 매칭요구 현황(1975)

구 분	50%이상	50%	50%미만	0%	비용분담 등	기타	계
주	1	41	59	52	9		162
주,지방	0	10	21	20	10		61
지 방	0	1	1	18	0		20
고등교육기관	0	7	64	80	48		199
합 계	1	59	145	170	67		442

*출처: ACIR, Categorical Grants A-52, p.169

현행 범주형보조금의 문제점은 전통적으로 연방행정이 가지고 있던 관료제상의 문제가 전부 투영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즉, 행정적으로 서류작업이 너무 많아 신청기관 공무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며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처리절차가 경직되어 있는 등 red tape 현상이 심하다. 또한 건별로 연방공무원이 심사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는 자금의 확실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어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중복된 서류를 요구하거나 보조금 본래의 목적을 일탈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조금이 양산됨에 따라 연방보조금 관리기관, 주 및 지방정부의 프로그램 전문가, 각종 이익집단, 입법공무원, 시장군수협의회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보조금 배분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2) 포괄보조금

1935년 'Social Security Act'에 의해서 시작된 보건 분야의 보조금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면서 이때부터 이미 포괄보조금의 출현가능성이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때 작은 규모의 수많은 프로그램을 공식보조금(Formular Grants)으로 승인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면서 보건 분야에 세분화된 보조금이 양산되었다. 그 결과 후버위원회는 보건분야 지방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 때문에 지역수요에 적합한 균형있는 프로그램을 창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이 위원회는 연방 건강보조금의 단순화와 분권화는 물론, 일반화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자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제80차 연방의회에 포괄보조금 법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포괄보조금의 설치목적은 기존 범주형 보조금을 통폐합하여 규모의 경제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며, 프로그램 확장에 대한 압력에 대처하고, 분권화의 가속화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던 프로그램들 간 연계성을 강화시켜 보조금 프로그램의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지방공무원들에게 사업선정에 대한 재량권을 대폭 늘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포괄보조금은 “여러 개의 범주형 보조금을 통폐합한 것으로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고, 공식에 의하며 배분되며 보조사업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에 의해 운영되고 프로그램의 비용 대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CIR(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이 설명한 포괄보조금의 다음 5가지 특징은 포괄보조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가. 광범위하게 정의된 기능분야에서 넓은 범위의 활동이 인정된다.

나. 보조사업자가 문제영역을 스스로 정의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자원을 분배하는데 실질적인 재량권을 가진다.

다. 행정통제, 재정보고, 계획수립 기타 연방정부의 통제는 국가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된다.

라. 연방공무원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가장 확실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법에서 규정한 공식에 따라 연방보조금이 배분된다.

마.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일반 지방행정기관으로 하며, 선출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공무원이 주된 의사결정자가 된다.

【표 6】 주요 포괄보조금

프로그램	설치년도	통 폐 합 프로그램수	금액 (백만달러)	배분공식	대상기관	매칭
건강보조금	1966	9	90	인 구	주	no
거리범죄저감대책	1968	0	405	인 구	주	90:10(계획) 50:50(건설)
고용증진대책	1973	17	1,358	실업자,전년도 지원금액	주,지방	no
지역사회개발대책	1974	6	750	인구, 빈곤도, 주택과밀도	지 방	no
사회보장(title XX)	1974	0	-	인 구	주	90:10(가족계획) 75:25(기타)

*출처: ACIR, Block Grants A-60, P.7, 1977

3) 공동세입형 보조금(Revenue Sharing)

공동세입형 보조금은 비용분담 등의 조건이 없이 일정한 분배공식에 의하여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것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보조금이다. 고정된 분배공식에 의해 배분된다는 점에서는 공식보조금과 성격이 동일하지만 연방정부의 보조금 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무성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1972년 신설된 공동세입형 보조금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대환영을 받았다. 프로그램 전문가가 통제하는 범주형 보조금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탄생한 이 보조금은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을 복원하려고 시도한 결과이며 닉슨대통령의 중요한 국내정책 수단의 하나가 되었다. 사실 어떠한 보조금도 주정부나 지방정부 공무원의 이렇게 큰 지지를 받은 적은 없다.

1972년, 1976년, 1980년에 걸쳐 주정부, 카운티 정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상호 강한 연대를 통해 공동세입형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의회의 반대를 막아내는데 성공했다. 이 공동세입형 보조금 프로그램에

필연적으로 수반된 정치적 분권화가 연방의원들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 중 하나였다. 연방의회의 반대자들은 연방정부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하여 통제를 할 수 없는 예산은 편성을 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실 공동세입형 보조금을 지지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분권화'와 '예산의 책임성'은 상호 배치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공동세입형 보조금이 연방의회에서 재승인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반대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데는 실패하여 1975년에 62조 달러였던 것이 1979년에는 조금 늘어난 68.5조 달러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공동세입형 보조금에 대한 인기는 지속되지 않았다. 포괄보조금이나 공동세입형 보조금보다 연방정부의 통제와 규제의 강화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 좁게 세분화된 범주형 보조금이 예산삭감에 대응할 때 훨씬 유리하였던 까닭이다.

1980년 후반기에는 공동세입형 보조금이 주정부의 계속 참여여부에 대한 오랜 논쟁 끝에 가까스로 다시 3년간 연장되었다. 이는 1980년을 전후로 많은 주정부가 예산잉여가 있거나 세금을 감축하였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공동세입형 보조금 배정에서는 주정부를 제외시킬 것을 주장한 결과이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주정부에 배정되는 공동세입형 보조금의 25%~45% 정도가 지방정부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첫해인 81년에는 주정부를 배제하되 다음 2년 동안은 주정부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선에서 타협을 이루어냈다.

공동세입형 보조금은 지출용도에 제한이 없지만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도시는 75%를 도로건설사업 등 새로운 프로그램 확장에 사용했고, 인구 10만 이상의 대도시는 50% 이상을 세금감축이나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연방통계청에 보고된 1976년도 공동세입형 보조금의 사용내역이다.

【표 7】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동세입형 보조금 사용내역(1976)

범 주	지출액(백만 달러)	비율(%)
공 항	8	0.1
교 정	167	2.5
교 육	1,248	19.0
행정관리	328	5.0
화재보호	523	8.0
일반공공지출	262	4.0
건 강	477	7.3
병 원	139	2.1
주 택	18	0.3
부채이자 상환	56	0.9
도 서 관	80	1.2
자연자원	27	0.4
공 원	248	3.8
경 찰	943	14.4
공공복지	166	2.5
부채상환	90	1.4
하수처리	371	5.7
사용료 징수시스템 구축	79	1.2
기 타	527	8.0
합 계	6,555	100.0

(4) 주요 연방보조금의 성격 비교

지금까지 설명한 주요 연방보조금의 유형별 성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보조사업자의 재량권 측면에서 보면 범주형 보조금이 가장 낮고, 공동세입형이 가장 높으며 포괄 보조금이 그 중간에 해당한다. 범주형 보조금 중에서도 공식보조금은 사업보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사업자의 재량권이 높은 편이다.

대상사업 범위는, 범주형 보조금은 사업대상을 법에서 사전에 규정하기

때문에 가장 좁으며, 공동세입형은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넓고, 포괄보조금은 사업자가 폭넓게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을 만큼 넓다. 배분기준은 범주형 보조금 중 사업보조금만 연방공무원의 행정적 검토를 통해 임의적으로 결정되고 나머지 보조금은 모두 법으로 사전에 규정된 공식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분된다.

【표 8】 주요 연방보조금의 성격비교

우 형	보조사업자 재량권	사업범위	배분기준	프로그램 구성비('80)
- 범주형				78.1
a. 사업	가장 낮음	좁음	행정적 검토	
b. 공식	낮음	좁음	입법화된 공식	
- 포 괄	중간	광범위	입법화된 공식	11.3
- 공동세입형	높음	가장 넓음	입법화된 공식	10.6[1)]

*출처: The Politics of Federal Grants,
George E. Hale and Marian Lief Palley, p.12

1) General 8.3%, Special 2.3% 합한 금액임

4. 국고보조금 운영현황

1) 총 괄

2001년 미국 지방정부의 총 세입은 9,554억 2천8백만 달러였다. 이중 재산세 등 자체 수입이 세입의 60.7%인 5,799억 4천5백만 달러였고 이전수입은 3,754억 8천3백만 달러(39.3%)였다. 주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3,401억 3천2백만 달러(35.6%)였고 연방정부에서 직접 수령한 보조금은 355억 3천1백만 달러(3.7%)였다.

【표 9】와 같이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1940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 1970년대에 정점을 이룬 후 꾸준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직접 수령하는 보조금은 1980년을 전후로 급상승했는데 이는 Johnson 행정부의 'Great Society 정책'으로 사회보장성 지출이 확장된 것에 기인한다. 연방정부보다 주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이 많은 것은 연방보조금 대부분이 주정부에 배정된 후 다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1970년을 전후로 보조금이 꾸준히 증가한 이유는 복지국가의 팽창, 서비스 전달비용의 증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방세구조의 취약, 이익집단 및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 증대, 정당의 영향력 감소, 지역주의의 강화 등 몇몇 정치·경제적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뉴딜정책과 복지국가의 팽창 이래 많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미국 국민들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서비스를 기대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12학년까지 공립교육이 제공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설치된 주립대학에서 대학교육을 받았다. 암이나 심장병 같은 치명적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보건 비용도 증가했다. 공공도로망, 대중교통 시스템, 청정한 공기 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도 급증했다.

초기 이민사회 시기 이후 20세기 초까지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자선단체, 정주지원 센터, 종교단체 등이 제공하였으며,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저소득 계층의 사회보장, 실업보험 등 기본적 서비스는 연방정부가 아닌 민간기관이 제공하였다.

행정서비스 비용은 늘자 국민들은 높은 세율에 불평하는 한편 더 많은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행정서비스 비용이 높아지는 첫째 이유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의 양적인 팽창이고 둘째는 인플레이션이다. 1967부터 1978년까지 12년 동안 소비자 물가가 100% 인상되었다. 서비스 제공 비용의 상승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요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베이비붐이다. 인구가 늘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층이 확대된 것이다. 늘어나는 어린이에 대비하여 학교시설을 확충하게 되었고, 의료보호 대상 노령인구도 늘어 사회보장 연금의 수혜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연구에 의하면 1955년부터 1974년까지 지방예산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인플레이션(52%), 서비스 질의 향상(35%), 서비스 수의 팽창(13%)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10]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금구조가 연방정부에 비해 경직되고 제한적이어서 재원 조달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서비스 제공의 수요와 자금 조달 간의 불균형으로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예산삭감이나 세금인상보다는 결국 연방보조금, 채권발행 등의 수단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 외에 몇 가지 정치적 문제가 연방보조금의 팽창에 기여했다. 정당의 힘이 약화됨에 따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등이 함께 공공부문의 이익집단을 구성하여 보조금 프로그램의 연방의회 통과를 지지하는 로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교육의 기회 확대 등으로 수준이 높아진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에 고정된 지지를 보내는 것을 거부하면서 정당의 영향력은 예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고, 이에 따라 재선을 노리는 연방의원들은 중앙정당보다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결국 경쟁적으로 지역구 사업을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편승하여 지난 40여 년 동안 주의회 연합, 주지사 협의회, 주의원 연맹, 전국 카운티 연합, 전국 도시연맹, 시장군수 협의회 등 지방정부 연합체의 로비활동이 급증했다.

【표 9】 지방정부 세입원의 변화추이

회계연도	총액(백만달러)	자체수입(%)	주정부(%)	연방정부(%)
1902	854	93.4	6.1	0.5
1913	1,637	94.1	5.6	0.4
1922	3,866	91.7	8.1	0.2
1932	5,690	85.7	14.1	0.2
1940	6,939	72.2	23.8	4.0
1950	14,014	68.4	30.1	1.5
1960	33,027	69.4	28.8	1.8
1970	80,916	63.5	33.3	3.2
1980	232,453	55.9	35.0	9.1
1990	512,322	62.8	33.6	3.6
2001	955,428	60.7	35.6	3.7

*출처: Census of Government, Bureau of the Census

한편, 지방정부의 세입은【표 10】과 같이 세수 탄력성이 낮은 재산세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밖에 판매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사용료, 수수료 등 기타 수입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 지방정부 세입구조

정부별	재산세(%)	판매세(%)	소득세(%) (법인,개인)	기타 (%)
Cities	52.9	26.3	12.8	8.0
Counties	68.3	22.7	4.5	4.5
School Districts	96.0	2.3	0.9	0.8
Special Districts	68.0	26.9	0.0	5.1

*출처: 2001 Census of Government, Bureau of the Census

2) 기능별 국고보조금 구성현황

국고보조금의 기능별 구성내역을 보면 【표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성 성격의 건강과 고용안전, 교육 분야에 80% 이상이 사용

되고 있으며, 고속도로건설 등 교통과 지역사회개발 분야가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보조금 총액규모는 1980년대 이후 급팽창했다. 1980년에 914조 달러이던 것이 1990년 1,353조 달러, 2000년 2,859조 달러, 2006년에는 4,341조 달러로 급상승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정부의 연방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표 11】 연방정부의 국고보조금 기능별 구성현황(단위:조 달러)

구 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환 경	0.1	0.4	5.4	3.7	4.6	5.9	6.1
농 업	0.2	0.6	0.6	1.3	0.7	0.9	0.7
교 통	3.0	4.6	13.0	19.2	32.2	43.4	46.7
지역발전	0.1	1.8	6.5	5.0	8.7	20.2	21.3
교육.고용	0.5	6.4	21.9	21.8	36.7	57.2	60.5
건 강	0.2	3.8	15.8	43.9	124.8	197.8	197.3
교용안전	2.6	5.8	18.5	36.8	68.7	90.9	89.8
사법행정	−	−	0.5	0.6	5.3	4.8	5.0
일반행정	0.2	0.5	8.6	2.3	2.1	4.4	3.9
기 타	−	0.1	0.7	0.8	2.1	2.6	2.8
합 계	7.0	24.1	91.4	135.3	285.9	428.0	434.1

*출처: Census of Government, Bureau of the Census

3) 지급형태별

1970년대까지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것의 비율이 비슷했으나, 1980년대 이후 개인지급 비율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개인지급 형태가 6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표 12】참조). 이는 1980년대 이후 Medicaid 등 사회보장성 지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12】 연방정부의 국고보조금 보조대상별 현황(조 달러)

구 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개인지급	2.5	8.7	32.6	77.3	182.6	273.9	272.6
물리적 자산	3.3	7.1	22.6	27.2	48.7	60.8	64.1
기 타	1.2	8.3	36.2	30.9	54.6	93.3	97.4
합 계	7.0	24.1	91.4	135.3	285.9	428.0	434.1

*출처: Census of Government, Bureau of the Census

4) 배분방식별

아래의 표는 보조금을 배분할 때 연방 보조금 관리기관의 재량권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임의배분과 강제배분이 거의 같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공식보조금의 증가와 포괄보조금의 운영으로 강제배분 방식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표 13】 연방정부의 국고보조금 재량별 구성현황

(단위 : 조 달러)

구분	1980	1990	2000	2005	2006
임의배분	53.3(58.3)	63.3(46.7)	116.7(40.8)	181.7(42.5)	186.1(42.8)
강제배분	38.1	72.0	169.2	246.3	248.0
합계	91.4	135.3	285.9	428.0	434.1

*출처: Census of Government, Bureau of the Census

5) 주요 부처별, 사업별 보조금 운영현황

현행 연방정부의 보조금 관리기관은 세부적으로는 26개 기관이지만 【표 14】와 같이 크게 7개 부처로 다시 정리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증가로 보건성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관장하고 있으며, 교육성과 건설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단위사업 별로는 의료보호(Medicaid, 93.778)사업이 2,018억 4천2백만 달러로 비중이 가장 크다.

【표 14】 주요 부처별·사업별 보조금 운영현황(2006, 10억달러)

기 관, 사 업 별	금 액
농무성	
학교급식(아침) 프로그램(10.554)	2,086
학교급식(점심) 프로그램(10.555)	7,570
여성 및 어린이 특별영양관리 프로그램(10.557)	5,363
어린이 및 성인 식량구호 프로그램(10.558)	2,141
주정부 관리 식량배급 프로그램(10.561)	2,455
교육성	
지방교육청 보조금(84.010)	12,713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주정부 보조금	2,887
주정부 대상 특별교육 보조금(84.027)	10,583
주정부 대상 직업교육 보조금(84.126)	2,720
보건성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93.767)	4,365
의료보호(Medicaid, 93.778)	201,842
긴급 가계구호 보조금(93.558)	17,140
어린이 지원강활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부담금	4,197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93.568)	2,480
어린이 발전 포괄보조금(93.575)	2,061
어린이 발전기금(93.596)	2,920
Head Start(93.660)	6,851
양육지원(93.658)	4,325
입양지원(93.659)	1,791
사회보장 포괄보조금(93.667)	2,250
국가안보성	
국가안보 보조금(97.067)	2,033
재해복구 보조금(재해특별지역, 97.036)	8,147
건설성	
공공주택 운영기금(14.850)	3,564
Section8 Housing Choice Vouchers(14.871)	13,797
공공주택 자산기금(14.872)	2,409
지역사회개발 포괄보조금(14.218)	3,823
내무성	
Mineral Leasing and Associated Payments	2,113
교통성	
공항개량 프로그램(20.106)	3,709
고속도로 건설(20.205)	33,128
자본투자 보조금(20.500)	1,407
연방교통 공식보조금(20.507)	5,534
합 계	**378,404**

6) 주별 국고보조금 배정현황

아래의 【표 15】를 보면, 주별 국고보조금은 재정력이나 빈곤도 등 보다는 면적·인구 등에 의해 배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도에 국고보조금의 주별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37,843,000 백만 달러 중에서 California (44,287), New York (38,888), Texas(23,293), Florida(18,461), Pennsylvania (15,985), Ohio(14,007), Illinois(12,937), Michigan(10,327), North Carolina (10,192), Louisiana(10,060) 등 10개 주는 1백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데 반해, North Dakota(832), Delaware(998), Vermont(1,065), South Dakota(1,077), New Hampshire(1,235), Montana(1,317), Idaho(1,454), Alaska(1,754), Nevada(1,767), Rhode Island(1,830), Wyoming(1,861), Nebraska(1,994) 등은 20억 달러 미만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밖에 사모아, 괌, 버지니아 군도, 마리아나 군도, 푸에리토 리코 등 미국령 해외영토와 본토의 인디안 부족에게도 일정액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표 15】 주별 국고보조금 배정현황(2006년도, 백만 달러)

Alabama 5,326 Alaska 1,754 Arizona 6,977 Arkansas 3,857 California 44,287 Colorado 3,590 Connecticut 4,424 Delaware 998 Washington D.C 1,998 Florida 18,461 Georgia 9,432 Hawaii 1,456 Idaho 1,454 Illinois 12,937 Indiana 6,533 Iowa 3,097 Kansas 2,656 Kentucky 5,613 Louisiana 10,060 Maine 2,212 Maryland 5,534 Massachusetts 8,946 Michigan 10,327 Minnesota 5,495 Mississippi 7,116 Missouri 7,037 Montana 1,317 Nebraska 1,994 Nevada 1,767 New Hampshire 1,235 New Jersey 9,391 New Mexico 3,719 New York 38,888 North Carolina 10,192 North Dakota 832 Ohio 14,007 Oklahoma 4,169 Oregon 3,886 Rhode Island1,830 Utah 3,202 South Carolina 4,909 South Dakota 1,077 Tennessee 7,563 Texas 23,293

Vermont 1,065 Virginia 5,317 Washington 6,359 Wyoming 1,861 West Virginia 3,121 Wisconsin 5,379 American Samoa 62 Guam 132 Mariana Islands 66 Puerto Rico 2,347 Virgin Islands 7 Indian Tribes 761 Others 11,125

7) 프로그램 세부내역

26개 연방기관에서 21개 분야에 걸쳐 매년 1,000여 종 이상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21개 분야에서 운영되는 보조금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2~3년 이상 복수년도 운영중인 프로그램 포함, grant.gov 홈페이지 참조).

- 분야별 보조금 수: 농업(95), 예술(14), 상업(11), 지역사회개발(30), 재해예방 및 구조교육(518), 고용(20), 에너지(19), 환경(249), 식품(94), 건강(964), 주택(9), 자선사업(47), 통계(4), 법률구호(47), 자연자원(154), 지역개발(12), 과학기술(503), 사회보장(155), 교통(39)

- 보조금 관리기관: 국제개발청, 농무성, 상무성, 국방성, 교육성, 에너지성, 보건성, 국토안전성, 건설성, 내무성, 법무성, 노동성, 국무성, 교통성, 재무성, 원호성, 환경청, 박물관협회, 우주항공처, 기록관리처, 문예진흥처, 국립과학재단, 중소기업청, 사회보장청

8) 투자적 지출의 재원분담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edicaid 등 사회보장성 보조금의 증가로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의 보조금이 늘어난 반면, 아래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도로건설, 시설물 건축 등 투자적 지출은 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16】 투자적 지출의 재원분담비율(%)

구 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연방지원	24.6	25.4	35.4	21.9	21.9	21.5	20.9
자체자원 (주, 지방)	75.4	74.6	64.6	78.1	78.1	78.5	79.1

Ⅲ. 지역사회개발 보조금 운영사례

1. 현행 지역사회개발 보조금의 유형

1) 대도시 지역사회개발 보조금(Entitlement Communities CDBG)



대도시 지역사회개발 보조금은 1974년 'the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에 의해 시작되어 오랜 동안 지속되어온 프로그램으로서, 앞서 소개한 대표적인 포괄보조금이며 현재 주정부 50곳을 포함하여 정부기관 1,180곳에 제공되고 있다.

대도시 지역사회개발 보조금은 대도시와 도시 근교 카운티의 중·저소득 계층의 주민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슬럼가나 퇴폐지역을 일소하는 한편 특별한 재원대책이 없어 복지와 보건에 심각한 위협에 놓일 수 있는 지역주민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당해 자치단체 스스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년 단위로 지원되는 공식 보조금(formula grant)이다.

(1) 대상지역

- 메트로폴리탄 지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의 주요 도시
- 인구 5만 이상인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기타 도시
- 도시지역의 카운티로서 위에 해당된 도시 이외에 인구 20만 이상 도시

(2) 보조금 배정 공식

빈곤도, 인구, 주택과밀도, 주택수령, 인구성장률 등 지역사회의 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로 구성된 법정공식에 의해 지원금액 결정

(3) 신청자격

- 정부기관(연방정부, 지방정부, 특별구, 원주민정부)

- 교육기관(교육구, 주정부의 통제를 받는 고등교육기관, 민간고등교육학원)
- 공공주택기관(주택공사, 원주민 주택공사)
- 비영리기관(민간고등교육학원외에 세법503(c)(3)에 해당되는 민간기관)

(4) 지원대상 사업

- 부동산 취득
- 주택이전과 철거
-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 구조의 재정비
- 상하수도, 거리정비, 주민센터, 학교건물의 적합한 용도로 전환 등 공공설비의 건설과 정비
- 에너지 보존과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활동
- 영리업체의 경제개발 활동이나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활동

그러나 공공청사의 신축, 개축, 취득이나 정치활동,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행위, 일반 행정관서가 직접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5) 신청방법

신청단체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에는 구역마다 주택보급계획을 포함한 각 프로그램에 적합한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이 목적들은 지역의 계획과 사업 달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또 종합계획에는 자금의 70% 이상을 중·저소득자에게 사용할 것을 포함하여 몇 가지 부대 이행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성은 제출된 종합계획이 국가의 주택보급 관련 법령과 배치되거나 현실적으로 이행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승인하게 된다. 승인이 이루어지면 건설성은 적절한 시기에 보조사업을 완수할 수 없거나,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거나, 시기에 적절하게 보조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할당된 보조금 전액을 지급한다.

(6) 시민참여

보조사업자는 일반시민이나 중·저소득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저소득자나 빈민가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세부계획을 수립

하고 이행해야 한다. 계획에는 시민들이 적합한 시기에 지역회합에 참석하고 보조사업자의 자금사용계획 및 집행과 간련된 각종 기록물을 살펴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프로그램 각 단계에 관련된 계획과 질문, 제안된 사업의 검토 등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서로 접수된 각종 민원에 대한 답변과 비영어 사용자가 많은 지역에서의 공청회 참여 강화방안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소도시 지역사회개발 보조금(the Small Cities CDBG)



소도시 지역사회개발 보조금은 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에 의해 198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대상은 지역개발보조금 수혜기관이 아닌 메트로폴리탄지역의 인구 5만 미만 도시, 인구 20만 미만의 카운티 지역 등 소도시이다. 소도시 지역개발 보조금은 연방정부의 위임에 의해 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하와이를 제외한 49개 주와 푸에리토 리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와이는 주 의회에서 이 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빈민지역 퇴치 등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주정부는 자금의 70% 이상이 중·저소득 소득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획해야 한다.

주정부는 매년 사업우선순위와 사업자선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역사회개발의 목적을 정하고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수혜단체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주요 지원대상사업

- 공공목적을 위한 자산의 취득

- 도시 상하수도, 주민 센터, 레크레이션 센터 등의 건설과 정비
- 공공 및 민간 건물의 철거 및 재정비
- 지역사회개발에 참여하는 비영리기관의 지원
- 경제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및 영리기관의 지원
- 기타 공공서비스 및 계획수립 활동

주정부는 총 보조금의 3%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프로그램 운영비와 기술지원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설성은 인구 빈곤도, 주택과밀도, 주택수령 등을 고려한 법정공식에 의해 산출된 자금을 주정부에 교부하고 주정부는 이를 일반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에 교부하며, 시민이나 민간기관에 직접 교부해서는 안된다.

(2) 이행부대조건

- 주정부는 주민참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그에 따른 세부 주민참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주정부는 지역사회개발과 주택수요 및 장단기 지역개발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각 지원 사업에는 프로그램 목적이 기술된 3개의 광범위한 국가목적 중 하나 이상에 적합하도록 개별 보조금을 사용하고, 그 70% 이상이 중·저소득 계층에 사용될 것을 보장하는 분배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 지방정부는 비폭력 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압을 금지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비폭력 시위를 할 때 시위자들이 공공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규정의 집행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3) 하와이 지역의 지역개발보조금 운영

건설성 하와이 지역사무소는 지역사회개발 보조금을 직접 운영한다. 이는 2004년 7월 말까지 소도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여부를 각 주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하와이 주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자금사용 현황을 보면 보조금의 약 70%를 공공설비에, 9%를 주택보급에, 4%를 공공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 하와이 지역의 자금 배분 공식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지만 빈곤도 지수만 가중치가 2배 높게 책

정되어 있다. 이외에 나머지 사항은 여타 지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4) 섬지역(Insular Areas)의 지역개발보조금 운영



건설성은 매년 7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인구비율에 따라 미국령 사모아, 괌, 마리아나 군도, 버지니아 군도 등 4개 섬 지역에 배분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하와이와 푸에르토 리코 지역에 있는 건설성의 현지사무소가 운영한다. 건설성은 이 자금이 관계 법령과 보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추진과정을 점검하며, 사업비 부족, 기술적 원조,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도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지역과 같다.

이밖에도 대통령이 재해특별구역으로 선포한 지역의 중·저소득자 계층에게 지급되는 '자연재해복구 보조금(Disaster Recovery Assistance)'과, 텍사스·아리조나·뉴멕시코·캘리포니아 지역 등과 멕시코 접경지역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되는 '접경지역(Colonias) 보조금' 등과 같은 지역사회개발 보조금도 운영되고 있다.

2. 운영사례

1) 프로그램 소개

(1) 14.218 대도시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관리번호 : 14.218

나. 보조금 관리기관 : 건설성

다. 법적근거 :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법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라. 목적 : 도시지역 중·저소득 계층에게 주택의 공급,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통해 도시 지역사회를 개발.

마. 보조금 유형 : 포괄보조금(공식보조금)

바. 사용 제약조건 :

- 보조사업자는 지역사회의 활성화, 경제개발, 공공시설 및 서비스의 개량 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 각 도시는 프로그램이 법적 기준과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자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이 보조금은 부동산 취득, 주택이축, 철거, 주거지역의 정비, 상하수도, 도로 및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의 설치와 개량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제약조건 하에서 공공서비스를 위한 지출에도 사용 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그들의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나 비영리기관과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면 영세업자나 다른 공익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이 프로그램은 중·저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빈민가 및 도시 황폐지역 일소에 도움이 되거나, 주민의 보건과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으나 다른 재원대책이 없는 긴급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사. 신청자격

- 기획예산처에서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중심도시로 인정한 도시와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인구 5만 이상인 기타 도시,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지역 카운티.

아. 수혜계층

- 보조금의 주요 수혜자는 중·저소득자임. 보조사업자는 수령한 보조금의 70% 이상이 중·저소득자를 위한 사업에 지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자. 신청절차

- **사전절차**: 보조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참여절차를 이행하고, 배정된 보조금의 액수나 사업범위 등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즉,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세부내역, 위치 등이 포함된 사업제안서를 공표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를 완성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령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담당공무원이나 주정부가 신청절차 안내를 위해 지정한 접촉창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신청절차**: 4개의 건설성 주관 주요 공식보조금을 포괄하는 종합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역사회개발의 목적과 자금의 사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성은 연간실행계획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 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기간 내에 사업종료가 어렵다면 보조금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출기한**: 공식보조금은 종합계획과 함께 실행계획을 보조금이 배정되는 회계년도의 8월 16일에서 11월 15일 사이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출 후 45일 이내에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차. 소청 : 보조금을 공제하거나 삭감 또는 미집행분에 대한 환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타. 사업갱신: 보조사업자는 3~5년마다 종합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매년 연간실행계획과 집행증빙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카. 보조금 결정방법:

- 각 대상도시는 다음 2개의 공식에 의해 계산된 보조금을 수령한다. 첫 번째 공식에 관련된 변수들의 가중치는 인구 0.25, 빈곤도 0.50, 주택과밀도 0.25이고, 두 번째 공식에 관련된 변수들의 가중치는 인구성장율 0.20, 빈곤도 0.30, 주택수령 0.50이다. 이 공식에 사용되는 공식 통계자료는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에 통계청이 작성한 가장 최근의 인구통계, 2000년도 통계에 의한 빈곤계층의 인구수, 2000년도 통계에 의한 방 1개당 주거인구가 1.01명 이상인 가정수, 2000년도 통계에 의한 1939년도 이전에 건축된 주택수, 1960년도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한 인구성장률 등이 사용된다.
- 보조사업은 일년 단위의 프로그램이지만 사업마무리에 시간이 필요하면 1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하. 사후관리

- **보고** : 프로그램이 포함된 사업에 사용된 자금집행 내역에 근거하여 연간 사업집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 **회계** : 연간 5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보조사업자는 기획예산처 회계기준에 따른 단독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기록** : 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자격·국가목적·재정관리·시민참여·지원내역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출된 기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종료일로부터 4년간 보관해야 한다.

거. 재정관련 정보
- **계좌번호**: 86-0162-0-1-451
- **총 지원금액** : 2005(2,876,923천 달러), 2006(2,592,790천 달러), 2007(2,077,306천 달러)
- **재정지원의 범위와 평균**: 공식에 의함
- **관련지침**: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s, 24 CFR 570.

너. 관련 프로그램: 14.219, Small Cities CDBG

더. 보조사업 사례: 해당 없음

러. 사업선정기준: 해당 없음

(2) 14.219 소도시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관리번호 : 14.219,

나. 보조금 관리기관 : 건설성

다. 법적근거 :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라. 목적:
- 중·저소득 계층자들에게 주택 공급,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고용기회 확대 등을 통해 도시 지역사회 개발.
- 각 보조사업은 중·저소득 가정에 혜택을 주거나, 슬럼가나 도시 황폐지역의 일소나 예방 활동을 돕거나 지역사회의 보건과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나 다른 재원대책이 없는 긴급한 사업 등 국가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마. 보조금 유형: 포괄보조금(공식보조금)

바. 사용 제약조건: 각 도시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자금우선순위를 정한다. 단,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74'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다음 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공공청사 등 일반건축물의 신축, 재개발과 주택수당 제공 등 기타 소득보전용 현금 제공은 금지된다. 이 보조금은 지역사회의 보건과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으나 다른 재원대책이 없어 긴급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 자금의 70% 이상이 중·저소득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해야 한다.

- 공공시설물의 취득, 재개발, 건축 및 개량,
- 주택재개발,
- 중·저소득가정 주택구입자금의 직접 보조
- 주택 이축비용 및 행정관리비용
- 경제개발
-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완성

사. 신청자격

- 하와이를 제외한 49개 주와 푸에리토 리코가 보조금에 대한 신청자격을 가진다. 단, 하와이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건설성에서 직접 관장한다.

아. 수혜자격

- 이 보조금의 주된 수혜자는 중·저소득자이며, 일반적으로 평균소득이 그 주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제외한 지역 평균소득의 80% 미만인 자를 중·저소득자로 규정한다.

자. 신청절차

- **사전절차**: 보조사업자는 담당공무원이나 주정부가 신청절차안내를 위해 지정한 접촉창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신청절차**: 지원자는 프로그램 시행년도가 시작되기 45일 전까지 종합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계획은 42USC 12703 등 관련 법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차. 소청 : 대상 아님

카. 사업갱신: 종합계획은 매년 제출해야 한다.

타. 보조금 결정방법: 공식 및 메칭 요구

- 주정부에 대한 배정은 미국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일정 공식에 따르며, 공식에 관련된 변수들의 가중치는 인구 0.25, 빈곤도 0.50,

주택과밀도 0.25이다. 공식에 사용되는 공식 통계자료는 당해 영토 내의 총 거주인구, 빈곤계층의 인구수, 방 1개당 주거인구가 1.01인 이상인 가정 수, 1939년도 이전에 건축된 주택수 등이다.

- 자금배정과 관련하여 메칭 의무는 없다.
- 보조사업은 일년 단위의 프로그램이지만 사업마무리에 시간이 필요하면 1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파. 사후관리

- **보고**: 연간 종합수행평가 보고 및 재정보고
- **회계**: 연간 5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보조사업자(주정부)는 기획예산처 회계기준에 따른 단독 회계감사를 받는다.
- **기록**: 보조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문서기록 관련규정(24 CFR 85.42)에 따라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하. 재정관련 정보

- **계좌번호**: 86-0162-0-1-451
- **재정지원의 범위와 평균**: 공식에 의함
- **관련지침**: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s, 24 CFR 570.

거. 관련 프로그램: 14.218, Entitlement Community CDBG

너. 보조사업 사례

개인 주택 재정비에 중점을 두고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시설의 심각한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개량과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개발 계획을 포함시키는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

더. 사업선정기준

하와이의 경우, 주 보조금 배분 공식의 3개 요인에 대한 가중치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한 사업을 우선 선정.

【표 16】 주별 지역개발보조금 예산배정현황(2006년도, 백만 달러)

Alabama	51	Alaska	5	Arizona	55	Arkansas	28					
California	480	Colorado	40	Connecticut	39	Delaware	7					
Washington DC	21	Florida	173	Georgia	83	Hawaii	15					
Idaho	11	Illinois	184	Indiana	81	Iowa	41					

Kansas 26 Kentucky 47 Louisiana 58 Maine 20
Maryland 57 Massachusetts 121 Michigan 139 Minnesota 62
Mississippi 36 Missouri 68 Montana 9 Nebraska 21
Nevada 20 New Hampshire 13 New Jersey 109 New Mexico 21
New York 375 North Carolina 74 North Dakota 6 Ohio 164
Oklahoma 31 Oregon 38 Pennsylvania 223 Rhode Island 18
South Carolina 36 South Dakota 8 Tennessee 50 Texas 265
Utah 20 Vermont 8 Virginia 65 Washington 62
West Virginia 25 Wisconsin 66 Wyoming 4 Amerian Samoa 1
Guam 3 Mariana Islands 1 Puerto Rico 112 Virgin Islands 2

*총계: 3,823(14.219 – small cities program, 14.225 – special purpose Grant/Insular Areas, 14.246 – state's program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포함)

2) 유형별 사례

사례1 : 학교적응 프로그램



북부 Denver 지역의 Latino High School 학생들의 높은 중도 탈락률을 줄이고자 Wellington Webb 시장이 개설한 프로그램으로, 중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설한 5주짜리 여름방학 프로그램이다.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 8학년에서 고등학교 9학년으로 바뀌는 기간이 학생들이 적응하기에 가장 힘든 기간이라고 한다. 1998년 여름에 시작된 이 학교적응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과 중 어려운 과목을 미리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적, 사회적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와 Denver 카운티, 공공교육기관이 힘을 합해 만든 합작품이다. 시는 이 사업에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지역사회개발 보조금 13만 달러를 투입했고, 지역 학교는 교육시설과 수위 서비스를 제공

하는 한편 교육보조재료 등 행정적·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운영진은 고등학교와 2개 지역 대학교의 맨토(Mentor)들과 3개 학교의 교사 및 행정실 직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North High School 관내의 중학교를 방문하여 선생님과 카운슬러를 만나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자를 물색하였고, 이렇게 해서 모은 학생들과 회합도 가졌다.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50명의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6월에서 7월로 이어지는 24일간에 걸친 프로그램 기간 동안 학생들은 선생님과 카운슬러와 함께 한 팀을 이루어 과정에 참석했다. 매일 아침에 시작되는 교과수업은 영문학과 미국 소수민족의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진 역사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조사와 영어 작문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숙제를 해내는 방법을 배웠고, North High School 의 각종 시설에 미리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배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선생님 및 선배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을 길렀다.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알게 되었으며, 바람직한 공부습관과 학교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익힐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지켜보면서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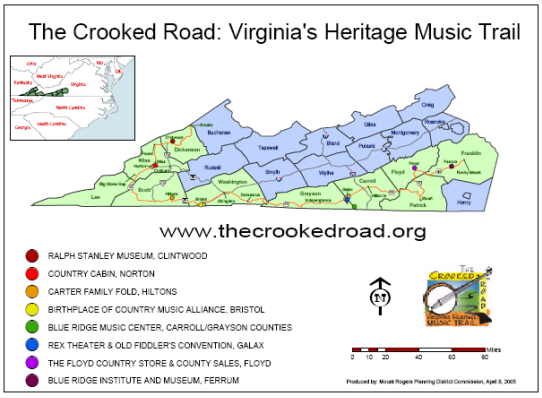
사례2 : 주택개발 프로그램

스템포드 시의 주택개발 프로그램은 중·저소득 계층을 위해 기존 서민주택을 개량하고 임대 및 분양용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이다. 이는 시와 주택소유주, 비영리 민간 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CDBG 보조금과 건설성의 다른 기금을 종자돈으로 삼고 민간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아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융자재원을 마련하였다. 이 융자금은 30년 간 거치기간을 두고 상환하도록 하였는데, 당해 년도에 부동산을 팔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통상적으로 15년 이내에 융자금 상환이 이루어진 덕분에 기금을 다른 신규 주택개발에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운영한 결과, 시의 융자가능 자산은 당초 CDBG의 6배가 넘는 8백만 달러가량이 되

었다. CDBG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개발이나 재개발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25% 정도로 제공되었으며, 나머지 75%는 민간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CDBG 융자금은 장기 거치자금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들은 민간은행에서 다시 많은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민간자금을 이용을 촉진하였더니 CDBG 자금이 개발비용의 100%로 지원됐을 때보다도 4배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었다. 이를 추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설계비 등 건축이전에 소요되는 사전비용이었다. 이런 비용은 통상적으로 주택소유자 등이 사전에 선납해야 했는데, 스템포드 시는 CDBG 보조금을 이용하여 무료로 설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장애물을 극복하였다.

지난 2년 동안 스템포드 시는 이 사업으로 임대아파트 194개를 건설하였고 이들 아파트 모두가 중·저소득 가정에 제공되었다. 이 사업은 2인 가족 주택부터 48세대 아파트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추진되었으며, 2천만 달러 이상의 CDBG 보조금과 1,510만 달러의 민간자본, 270만 달러의 건설성 소관 HOPE 2 보조금과 44만4천 달러의 시 자본예산이 사업에 투입되었다.

사례3 : 버지니아 전통음악 트레일



버지니아 남서부의 지역개발위원회는 아팔라치아 지역위원회의 보조금 68만 달러와 CDBG 보조금 70만 달러를 이용하여 버지니아 남서부의 음악문화 유산지대를 따라 '버지니아 전통음악 트레일'을 구축함으로써 내국인과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US 국도 221, 58, 23번을 따라 최초로 미국식 벤조, 바이올린, 베이스 기타를 탄생시킨 버지니아 서남부의 8개 카운티, 10개 타운, 3개 시를 잇는 벨트를 구축하여 전통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시키는 사업이다.

총 200여 마일에 걸친 음악여행길 중에서 관광객의 방문 포인트는 스콧트 카운티의 Carter Family Fold, 그레이슨 카운티의 the Blue Ridge Music Center, 부리스톨 카운티의 컨츄리 뮤직 발상지, 갤럭시 카운티의 전통 바이올린 연주자 연례총회 등이다. 또 다른 유명한 방문 포인트는 Stanley의 출생지인 Ralph Stanley 박물관인데, 이는 빅토리아 시대의 낡은 주택을 'CDBG 빈민가 퇴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박물관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제 Stanly와 Lester, Flatt, Earl Scruggs는 컨추리 뮤직의 상징이 되었다. '버지니아 음악유산 트레일'은 이 지역의 경제뿐 아니라 버지니아 서남부의 경제를 부흥시킬 중요한 요소로 기대되고 있다.

사례4: 임대주택 환경개선 융자 프로그램

임대주택 환경개선 융자 프로그램은 특정지역의 독신자 임대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해 제일은행(First Bank)과 아바다 시(City of Arvada)가 함께 만든 것으로, 3개 제일은행 지점이 자금 제공, 융자비용 절감, 융자절차 개선 등을 포함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금융기관 등이 구시가지 지역이나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임대주택 소유자에게 저렴한 이율의 융자를 제공할지라도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시 공무원들은 독신자 임대주택 소유자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환경개선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 프로그램도 처음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아바다 시는 3개 참여 은행과 협약을 맺고 3백만 달러를 5년과 10년짜리 저리의 융자상품으로 구성하여 3년 동안 제공하기로 했다. 융자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비용과 계약체결 비용, 서류비용 등 융자에 따른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융자의 상한액을 5만 달러로 한정하고, 아바다시의 구시가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지역을 정비하고 독신자 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하였다. CDBG 보조금 담당 시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도왔는데, 제일은행에 지원서가 제출되면 시의 보조금 담당 주택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승인이 이루어지면 서류 제출이 완료된 시점에 50%,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50%의 자금이 지급되었고, 공사가 완료

되면 시 보조금 담당 주택전문가들이 최종점검을 하여 제일은행에 보고했다.

사례5: 마을회관 건립



시청 바로 북쪽에 위치한 아나임 재개발청 소유의 대지에 건립된 아나임 마을회관(Anaheim Community Center)은 노인회관, 예술회관, 체육센터, 법률구호 사무소,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1998년 10월에 개설되었다. 이 마을회관의 건설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데만도 1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 총 사업비가 850만 달러인 이 프로그램은 주로 CDBG 보조금으로 충당되었지만, 아나임 시, 아나임 시 재개발청, 캘리포니아 주정부,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각종 설비의 설치와 장비의 구입은 주민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였는데,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타일을 1개당 2,000달러 이상에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 시설은 지역사회의 많은 단체에 사무실을 제공하던 종전의 조지 워싱턴 마을회관을 대체한 것이다. 특히 시 최초로 세워진 체육관은 아나임 시, 아나임 YMCA 등에서 제공하는 청년 및 성년 프로그램의 요체가 되었다. 이 시설을 관장하는 아나임 시 지역사회 서비스국에 의하면 이 회관은 연간 3만 명의 젊은이와 8천여 가정, 1만4천여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마을회관은 목재, 석재 같은 전통의 소재로 만들어져 아름다우면서도 기능적이며, 19세기 말부터 내려오는 캘리포니아의 전통적인 장인 디자인의 추억이 물씬 배어있는 건물이 되었다.

사례6 : 도심 활력 되찾기 사업

미주리주 오작크(Ozark)시는 다른 지방 도시와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이 변두리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도심지역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도심 빌딩의 열악한 환경과 부서진 보도, 부실한 상하수도 서비스 등으로 도심지역에 대한 투자가 극히 드물게 되어 2000년 초까지 도심의 많은 역사적 빌딩들의 공실률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상업지도자들이 '오자크 도심 활력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수립하면서 도심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계획의 목적은 황폐화된 도심을 종전처럼 상업과 관공서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었다. 2003년 오자크시는 미주리 주정부로부터 30만 달러의 CDBG 보조금을 받고, 메칭 펀드로 11만 달러를 투입했다. 시의 도심지역 개량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 지역의 재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인식한 빌딩주와 새로운 투자자들은 빌딩의 정비와 상업 활동의 증진을 위해 3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 투자로 도심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68개가 창출되었는데, 대부분이 전문적 직종과 자영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그리고 소매업 들이었다. 또한, 역사적 건물 16개가 보수되었고 19개의 사무소와 소매업소도 문을 열게 됨으로써, 도심은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지역이 되어 버렸다. 새로 단장한 보도와 가로등, 아름답게 재건된 빌딩이 도심을 밝혀 주었으며 도심지역 상하수도 보수공사도 대부분 완료되었다. 시는 최근에 거리와 보도를 개량하고 가로등을 늘리며 조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새로운 CDBG 보조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례7 : 거리범죄 저감대책

1998년 초, 요크 시 경찰청은 증가하는 폭력에 대처하고 마약 범죄 집단을 소탕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을 되찾고자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특정 우범지역에서 법과 질서를 되찾을 경찰특공대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그것이었으며, CDBG 보조금이 여기에 투입되었다.

경위 한 명과 6명의 순경으로 구성된 경찰특공대들에게 거리범죄를 퇴치하고 마약거래를 일소함으로써 특정 우범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특명이 주어졌다. 작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특공대는 앞에는 문장이 그려지고 뒤에는 '경찰'이라고 쓰인 밝은 색 빨강 셔

츠를 입고 활동하였다. 대원들은 911 비상전화에 응할 의무가 면제되었고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과 일정을 조정하면서 범죄의 진압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CDBG 보조금은 이들의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들의 요구로 투입된 보강 순찰인력들의 초과근무 수당에 사용되었다. 작전 개시 이후 7개월 동안 폭력과 마약거래가 가장 심했던 3개 우범지역에서 556명이 체포되었다. 특공대 활동 이후 마약관련 총격사건은 6건 이하로 줄어들었고 이 6건 가운데서도 전보다 규모가 큰 사건은 하나도 없었다. 유탄이 언제 집으로 날아올지 몰라 집안에 갇혀 살아야만 한다고 불평하던 우범지역 주민들은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작전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사례8 : 노인센터 건립

이스트 프로비던스(East Providence)시는 1993년도 기준으로 주민의 4분의 1 정도가 60세 이상의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노인센터가 없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35명의 의원으로 노인센터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치 선정과 사업구상에 착수했다. 1996년 자문위원회의 제안으로 3에이커 정도의 넓은 대지에 빌딩 3개를 포함한 독신자 숙소와 넓은 운동장이 딸린 위치가 선정됐다. 구입가는 180만 달러였는데, 시는 취득비와 보수비용의 절반이 CDBG 사업대상이어서 CDBG 자금을 이용하여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입했다.



시는 노인센터 개발을 위해 30만 달러를 할당하였고, 내부와 외부 보수비용으로 85만 달러가 소요되었다. 시의 한 공무원은 이 사업은 CDBG 기금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노인센터는 1998년 5월에 문을 열었고, 이미 1,000명 이상의 노인들이 노인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노인 헬스센터에서는 노인병치료 전문의가 응급치료를 하고 있으며 정규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건강을 돌보고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

밖에도 도서관, 독서실, 컴퓨터실, 미술실 등 다양한 활동실이 있으며, 보치게임장, 편자던지지 게임장, 산책로 등 실외시설이 있다. 매일 식사 150끼가 제공된다.

사례9: 생애 첫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

뉴저지주 엘리자베스(Elizabeth)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애 첫 번째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일정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주택의 취득절차와 유지관리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개발 국고보조금과 지역 민간단체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데, 재정지원의 경우, 구입비용의 2%와 부대비용의 1만 달러까지 무상으로 지원된다. 교육과정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와 스페인어로 진행된다.

- 신용관리(credit) : 모기지론을 받기 위한 credit의 취득 및 유지·개선 방법
- 신용평가보고서 이해방법
- 어느 정도의 자금동원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방법
- 주택취득절차(신용제공자, 공증인, 부동산중개인 등 관련자의 역할)
- 주택소유자의 각종 책임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주의 소득이 지역 평균소득의 8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주택구입 후에는 주택개량(renovation) 비용도 지원되는데, 시에서 개량비용의 25%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75%는 모기지론에 포함시켜 상환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민관이 힘을 합해 만든 작품이다. 먼저 Summit 은행은 1백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시장금리 이하의 저리로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credit관리 등에 관한 교육교재도 만들어 제공했다. Community Access Unlimited는 교육장소와 각종 물자를 제공했으며, Urban League는 개인별 신용평가 상담과 교육교관을 제공했다.

사례10 : 만물수리사(Mr. Fix-it) 프로그램

에디슨 시에서는 지역사회개발 보조금을 투입하는 'Mr. Fix-it'프로그램

을 통해 시내 노인 또는 장애인 가정에 사소한 고장 수리와 안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이동주택(모빌홈) 거주자 등이 모두 해당되나, 건물주가 제공하게 되어 있는 수리 및 서비스는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안전관련 시설 또는 기계의 수리와 건강관련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옥안전점검으로 창문과 대문의 수선, 간단한 배수시설 보수, 계단 수리, 간단한 전기기계 수리, 문풍지 갈기, 바람막이 창문 덧대기, 걸쇠설치, 액자와 커튼 걸쇠달기, 화재방지기 설치, 에어컨 설치 또는 제거, 자물쇠 설치, 잠금 막대 설치 등이다.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시 재정으로 충당되며, 신청자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야 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리작업은 신청순서대로 이루어진다. 다만, 응급 시나, 숙련된 기술자의 가동 여부, 수리대상지역의 위치 등으로 순서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 사업에는 '손재주 좋은 사람'이면 충분하고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며, 사업 참여자에게는 스스로 판단하여 수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부여된다.

이 사업에서 취급하지 않는 서비스는 중요한 기계의 설치와 수리, 페인트칠, 실내장식, 지붕루핑수리, 정원관리, 무거운 물건 옮기기, 천장 환풍기 또는 온수히터 설치, 난로수리, 난방기 설치 등이다. 서비스 신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고, 중고물품을 사용하거나 건물주나 토지주가 처리하게 되어 있는 쓰레기나 재고품 등을 수리에 쓸 수 없다. 또한, 허가를 필요로 하거나 정부기관의 검사나 시설사용 금지 물품에 대한 수리 등도 할 수 없다.

이 사업은 지역개발보조금 30만 달러를 받아 1995년 8월부터 실시됐으며, 지금까지 1,455 가구에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후 주

1) US Bureau of Census, 2000. p.304

2) Kenyon, 1995, p.38

3) State and Local Finances under Pressure, Edward Elgar, 2003

4) State and Local Finances under Pressure, Edward Elgar, 2003

5) Caffrey, 2002

6) ACIR, A crisis in confidence and competence, p.46

7) Fox, 1998, p.41

8) ACIR, Categorical grants, pp.16~17

9) The Public Interest 35(spring 1974), pp.89~102

10) State and Local Government, Brookings institution, 1976, p.379

【참고자료】

범주형 보조금 프로그램 현황(1978)

기능별	프로그램수
국방	5
기초과학 조사	1
에너지	6
수자원	7
토지관리 및 보전	13
레크레이션 자원	10
환경오염관리	35
기타 자연자원	4
농업조사	9
모기지론 및 보험	2
기타 상업규제	2
지상교통	36
수상교통	2
대중교통	8
항공교통	3
기타 교통	1
지역사회개발	5
지역개발	36
재해구호	9
초 중등교육	70
고등교육	10
연구 및 일반교육지원	21
고용	23
사회보장서비스	1
건강	47
공공보조	27
원호대상자보호	5
형사법원 지원	13
재산 및 기록관리	1
기타 일반관리	2
합계	492

【참고문헌】

- State and Local Finances under Pressure, David L.Sjoquist, Edward Elgar MA, 2003
- Federal Intergovernmental Grants and the States, Shama Gamkhar, Edward Elgar MA, 2002
- The Changing Politics of Federal Grants, Lawrence D. Brown,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84
- America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Laurence J. O'Toole Jr., CQ Press, Washington DC, 2006
- Budgetary Politics in American Governments, James J. Gosling, Routledge, New York, 2004
- The impact of Intergovernmental Grants on the Aggregate Public Sector Daniel P. Schwallie, Quorum Books, New York, 1989
- Managing Federalism, Raymond A. Shapek, Community Collaborators, Virginia, 1981
- Rethinking Federalism, Claude E. Barfield,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ashington DC, 1981
- The Politics of Federal Grants, George E. Hale,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Washington DC, 1981
- From Nation to States, Edward T. Jennings Jr.,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6
- http://usasearch.gov
- http://www.hud.gov
- http://www.grants.gov
- http://www.usa.gov